
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(관세청 고시 제2023-23호, 2023.4.12.)

2. 개정사유

-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, 고시 내용을 재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-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(제16조)
 - (기존)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,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
 - (변경)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,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
 - *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도 고시 본문 변경 필요없음

- 「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」 수정(별지 제1호 서식)

-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 일자 : 2023년 12월 12일